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9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황운하·강경숙·김재원

김준형 · 정춘생 · 신장식

이해민 · 서왕진 · 박은정

차규근 • 백선희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는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수도권의 과중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이나,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극히 미흡하다는지적이 있으며,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정 전반과 행정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법률 제19563호, 2024.7 0.19.)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였으나, 국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분리해야 함으로써, 회의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 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	<u><삭 제></u>
회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	
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분원)	
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	
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	
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	
<u>한다.</u>	